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
----------	-----

2019. 3. 8. (금)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2019년 3월 8일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원 의원)

###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교직원·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활동참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현재 충북은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현재 예산지원과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2017년 31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66억 예산으로 11 시·군 전 지역에서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충북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충북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의미와 철학을 명료화 하고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실현시켜 나갈 구체적인 교육활동과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안 제8조, 추진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안 제10조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화와 지원을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에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의 취지와 조문 구성 및 내용면에서 바람직하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공동교육활동인 만큼 유기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충북행복교육지구”란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원
2.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3.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 마을 학습망 구축
5.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 관련 연구 및 조사
8.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9.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 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 평생교육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비 반영
- 관련: 기획관-7325(2016.8.10.) 「충북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충북 11개 지역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5조(사업범위)**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원
2.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3.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5.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 관련 연구 및 조사
8.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9.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 향후, 마을교육공동체의 확대 및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이 확대될 것이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비용 추계에서는 제외함

#####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추계	연도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교육청예산)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13,400,000
2.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180,000	180,000	180,000	180,000	720,000

※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투자 예산은 제외

#####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보 예정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주병호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380,000	3,480,000	3,580,000	3,680,000	14,120,000	
자체예산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13,400,000	
특별교부금	180,000	180,000	180,000	180,000	720,000	
세 출	3,380,000	3,480,000	3,580,000	3,680,000	14,120,000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13,400,000	
꽃밭디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180,000	180,000	180,000	180,000	72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380,000	3,480,000	3,580,000	3,680,000	14,12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13,400,000
	특별교부금	180,000	180,000	180,000	180,000	720,000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